

의안번호	2201308
의 퇴 인	박희승 의원
회 답 일	2024.06.20.
추 계 번호	24F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74조제1호제1항사 목 신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 대상법인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발전기금을 추가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4조제1항제1호 사목 신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 손금산입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손금산입특례 전용대상에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발전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손금산입액이 증가할 경우 과세표준 감소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

- 학교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법인세를 감면

[표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상 근거조항 (제74조제1항)	해당 법인
제1호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제2호	사회복지법인
제3호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 포함), 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포함),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운영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제4호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제5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제6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제7호	국제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조직위원회
제8호	공익법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제9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로 인한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은 1,125억원 수준임

[표 3] 최근 5년간(2020~2024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법인세 감면실적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잠정)	연평균
감면실적	1,538	1,675	823	783	810	1,125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 개정안에 따라 손금산입특례 대상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발전기금이 추가될 경우 법인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라 손금산입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발전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 규모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동 개정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그러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아직 설립 전으로, 추계기간 동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발전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범위·규모 등 수익사업의 소득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추계 곤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